

의안번호	제 94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12월 일 (제 296 회)

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0년 12월 3일

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

의안 번호	94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0년 12월 3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 지정 신청 계획안에 대하여 「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

2. 의견 수렴사항 : 찬성 또는 반대

- 특구의 명칭 : '충북 태양광산업 특구'로 함
- 충북 태양광산업을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내 다수의 태양광 관련기업이 집적화 되어 있는 7개 시군의 특화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태양광산업 특구로 지정 되도록 지식경제부에 신청할 계획임

3.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(안) : 불임

4. 관계법령 발체 : 불임

5. 참고자료 : 불임

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(안)

□ 추진배경

-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의 확산으로 대체에너지 산업의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음
- 현대중공업, 한국철강, 신성홀딩스 등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입주에 따라 태양광 산업 발전의 전기를 맞이함.
- 하이닉스, 동부하이텍, 매그너칩 등 기업과 우수한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

□ 특구개요

- 명 칭 : '충북 태양광산업 특구'
- 범 위 : 청주~충주를 연결하는 국도 36호선 주변
- 추진주체 : 도 및 7개 시·군 공동
 - ※ 7개시·군 : 청주, 충주, 청원, 증평, 진천, 괴산, 음성
- 특구사업 내용 : 9개사업
 - 청주시 : 신재생에너지 체험홍보관 건립, 기술개발 지원 사업
 - 충주시 : 태양광산업 부품소재 허브단지(충주기업도시 내 생산용지)
 - 청원군 : 푸르미 마을(청원 강내)
 - 증평군 : 태양광부품 산업 전문단지(증평제2산업단지)
 - 진천군 : 태양광 부품소재 전문생산 지구(이월산업단지)
 - 괴산군 : 태양광부품소재 산업단지(괴산 사리)
 - 음성군 : 태양광 부품소재 특화단지(원남산업단지)
 - 진천음성 : 태양광 부품소재 특화단지(진천음성혁신도시 내 생산용지)

□ 추진상황

- 태양광산업특구 지정추진 연구용역('09. 9 ~ '10. 12)
- 태양광산업특구 지정 연구용역 중간보고('10. 5)
- 지식경제부 방문 업무 협의('10. 5)
- 태양광산업특구연구용역 관계관회의('10. 7)
- 태양광산업특구연구용역 최종보고회 ('10.11.4)
- 특구지정계획 공람공고('10.11.12), 공청회 공고('10.11.12)

□ 기대효과

- 태양광 산업의 제도적·체계적 발전 도모
- 국내 유일의 「태양광산업 특구」 브랜드 가치 창출
-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Solar Valley 조성

□ 향후계획

- 공청회(12. 7) → 도 의회의견 수립 → 특구지정신청 (12월중)

[참고자료]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추진계획 : 붙임

관계법령 발췌

(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)

□ 특구지정 목적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공동 지정신청

제4조(특구의 지정신청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(이하 "특구계획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하고,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구지정을 신청하고,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.

□ 의견청취 및 결과 제출

제5조(주민 등의 의견청취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, 공청회를 열어 주민·기업·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7조(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) ① 특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(1~8 생략)

9. 그 밖에 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시행령 제5조(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) ①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특화사업의 시행기간
2.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
3.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

□ 특구의 지정신청

제9조(특구의 지정 등)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(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.

시행령 제3조(특구의 지정신청)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(이하 "특구"라 한다)의 지정을 신청받으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(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의 협의 및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(이하 "특구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특구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□ 특구의 명칭

제16조(특구의 명칭) 특구의 명칭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, "특구"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관광진흥법」 제70조에 따른 "관광특구"와 구분되도록 정하여야 한다.



참 고 자 료

2010. 12

아시아솔라밸리 충북 조성을 위한

태양광산업 특구 지정 추진계획



아시아솔라벨리 총복 조성을 위한 태양광산업 특구 지정 추진일정

- 태양광 관련기업의 도내 대거 입주와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태양광 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
- 태양광산업 육성 관련 사업을 집적화 전문화로 특화 “아시아 솔라벨리”로 조성

□ 사업개요

- 특구의 명칭 : 충북태양광산업 특구
- 공간적 범위 : 7개시군(청주-청원-증평-진천-괴산-음성-충주)
- 사업내용
 - 셀·모듈, 장비·시스템, 소재·웨이퍼 기업 집적화
 - 태양광 전문산업단지 조성 입지확보
 -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입지확보
 - Solar County 조성, 에너지과학공원 조성 등
- 추진주체 : 충청북도, 시, 군
- 사업기간 : 2009 ~ 2010 (2년간)
- 총사업비 : 2억원(용역) : 도비 1억, 시·군비 1억
- 관 계 법 :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

□ 추진사항

- 세계태양광엑스포2009 참가 홍보('09. 2)
 - 도, 충주대, 5개기업 (26개 부스)
- 태양광산업 육성포럼(라마다호텔)('09. 3)
- 특구지정을 위한 조사용역 계약('09. 9.23)
- 시·군 태양광사업 실태조사('10. 2. 2~2. 9)
- 태양광산업 선진지 견학(UAE, 이스라엘, 오스트리아)('10. 6. 6)
- 특구지정 관계관 회의(22명) ('10. 7. 8)
- 지경부 특구기획단 방문 협의 및 자문 ('10. 8.20)
- 태양광산업 특구 지정을 위한 시군 관계관 회의('10.10.13)
- 연구용역 최종보고회('10. 11. 4)
- 특구지정계획 공람공고('10.11.12), 공청회공고('10.11.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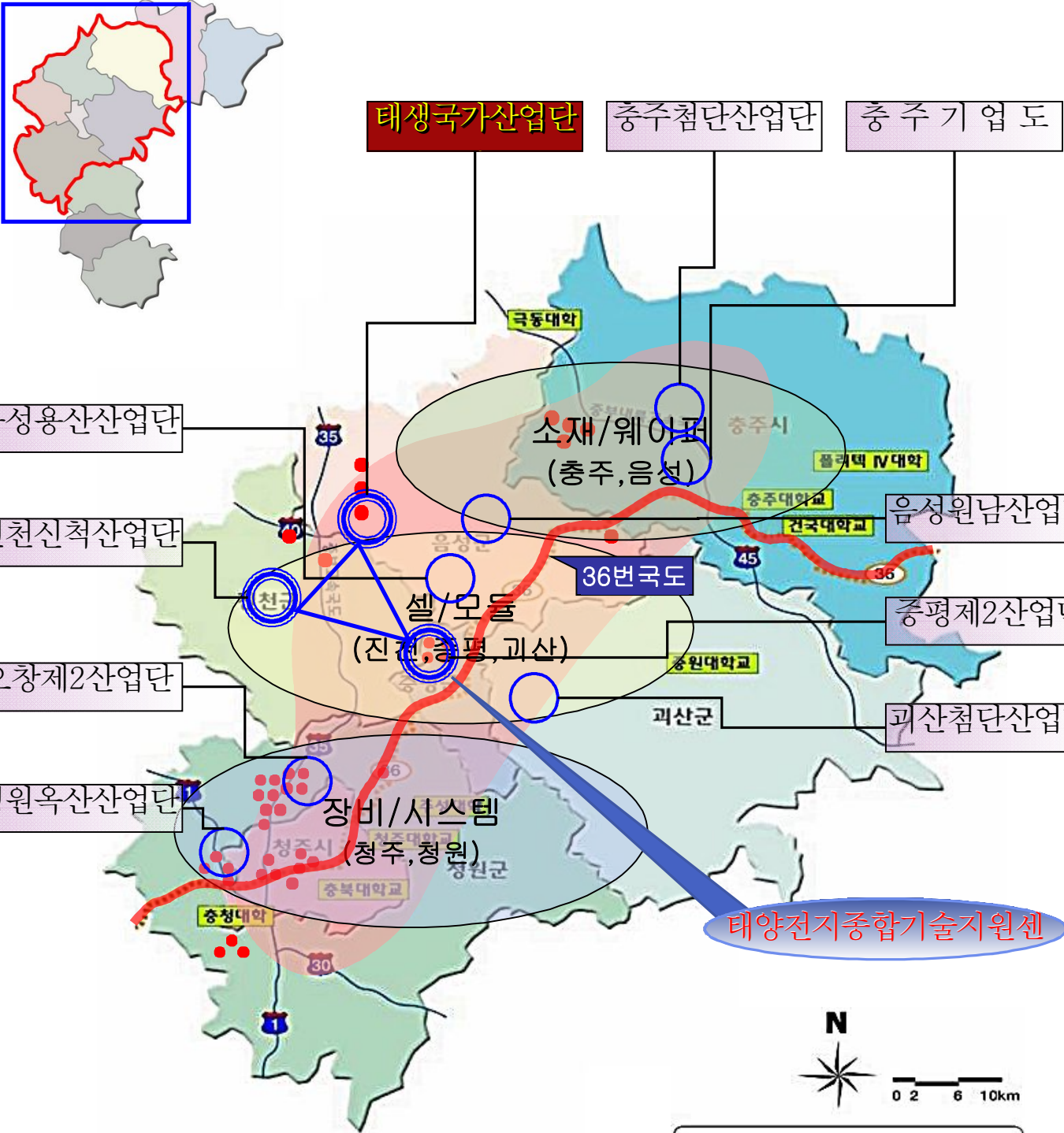
□ 앞으로 추진 계획

- 공청회 및 의회 의견수렴 : '10. 11
- 특구지정 신청 : '10. 12월 지식경제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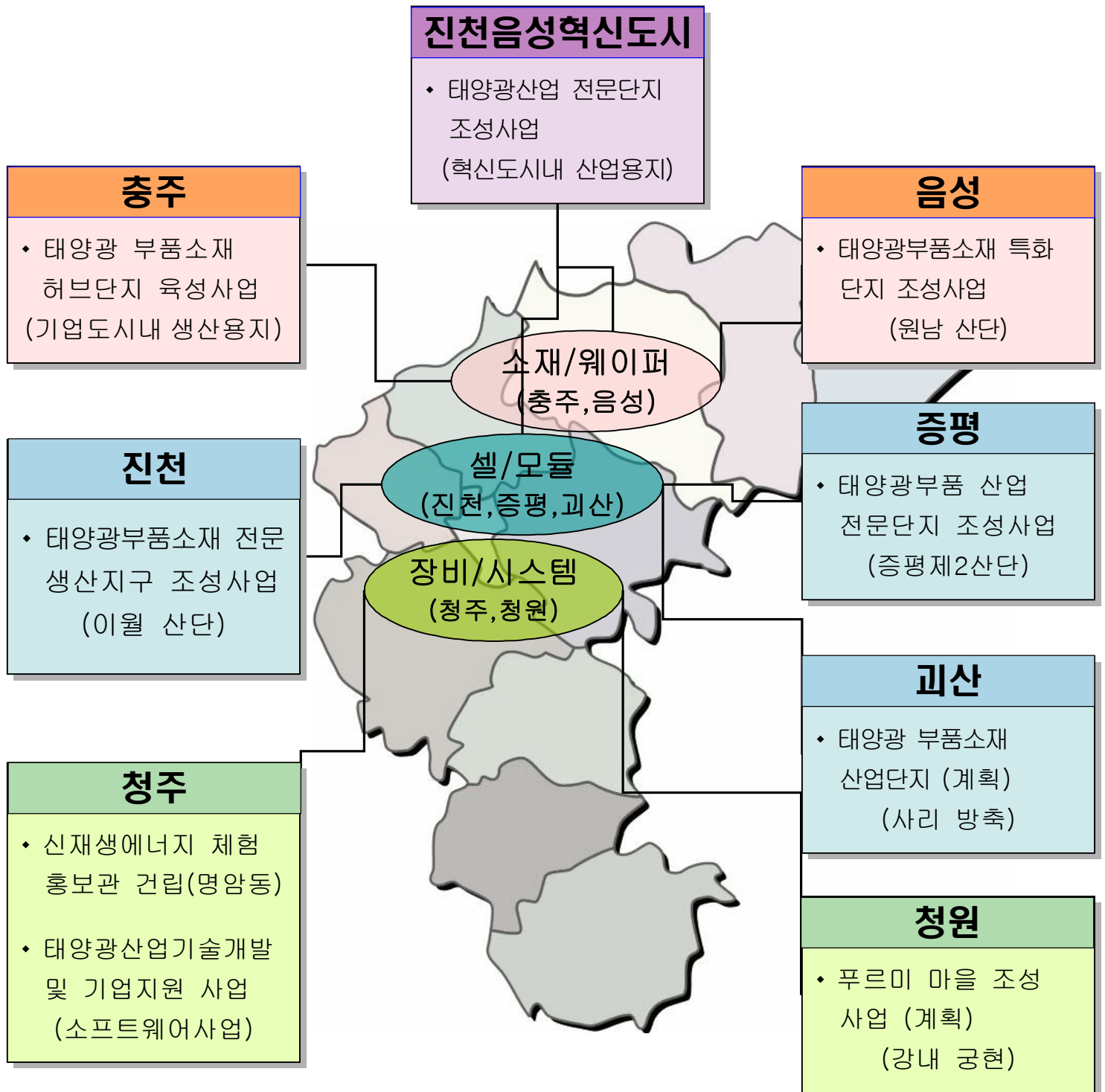
□ 기대효과

- 태양광 기업 집적화 및 생산중대로 국내 태양광 산업 주도
- '15년까지 GRDP 3% 증가, 전국비중 4%대 진입 견인
- 지역의 고용증대 및 성장 시너지 극대화
- 국가 태양광 산업의 중추적 역할, 아시아솔라밸리 실현

아시아솔라벨리 중복



솔라벨리 특화 사업



1단계 특화사업(추진사업)

1. 신재생에너지 체험홍보관 건립사업

□ 사업개요

- 위치 :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70번지
- 사업비 : 2,472백만원(지방비 2,472)
- 면적 : 465.6㎡
- 기간 : 2010. 2 ~ 2010. 10
- 사업내용 : 청주시 우암어린이회관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설치 456.6㎡, 태양광조형물(30kW급) 설치

□ 규제특례 조항

- 특구법 제23조1항2항(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)
- 특구법 제36조의 10(건축법」에 관한 특례)

□ 규제특례의 필요성

- 특구의 특화사업 홍보 및 안내물 설치로 특구 이미지 극대화 추진
- 타지역과 차별화된 광고물 설치로 대외 경쟁력 확보
- 특구의 특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태양광산업 관련 야외전시회를 위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효율적인 전시행사 추진

□ 규제특례 세부내용

규제특례 조항	규제특례 세부내용
특구법 제23조1항2항 (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)	-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또는 신고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역특성에 맞는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허용
특구법 제36조의 10 (건축법」에 관한 특례)	-「건축법」 제20조제1항 :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,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 대상 -청주시 우암어린이회관내 태양광산업 관련 전시회 가설건축물 설치시 신고대상 적용

2. 청주시 태양광 산업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

□ 사업개요

- 위치 : 청주시 일원
- 기간 : 2009. 1 ~ 2011. 12
- 사업비 : 786백만원
(시비 486, 대학·업체 300)
- 주요사업 : 3개분야
 - 고효율 박막형 Si 태양전지 개발
 - 태양광 트래킹을 위한 광센싱 시스템 개발
 - 태양광 발전시스템용 전원장치 기술 개발

□ 규제특례 조항

- 특구법 36조 8호(「특허법」에 관한 특례)
- 특구법 제36조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

□ 규제특례의 필요성

- 태양광에너지 관련 기술력은 있으나 연구시설이 취약하여 기술개발 및 상품개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대학의 연구실과 1:1 공동으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을 지원

□ 규제특례 세부내용

규제특례 조항	규제특례 세부내용
특구법 36조 8호 (「특허법」에 관한 특례)	-특허청장은 특허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「특허법」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음
특구법 제36조 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	-특구에서 특허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·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

3. 태양광 부품소재 전문생산 지구 조성사업(진천 이월산단 내)

□ 사업개요

- 위치 :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1152번지 외 3필지(이월지방산업단지내)
- 사업비 : 500억(민자)
- 면적 : 부지 126천㎡, 건축 50천㎡
- 기간 : 2010. 11.~2010.12.
- 사업내용
 - 태양광 Back Sheet/EVA 필름/PET 필름 생산라인 설립

□ 규제특례 조항

- 특구법 제26조(「출입국 관리법」에 의한 특례-제9조 3항(사증발급절차), 제10조 2항(체류기간))
- 특구법 제36조의8(「특허법」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2항, 동법시행령 9조 2항)
- 특구법 제44조의3 2호(「에너지 이용 합리화법」에 관한 특례-제65조(에너지 관리자 등 담당자 교육))

□ 규제특례의 필요성

- 태양광 관련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
- 선등록주의에 입각한 특허등록의 신속한 절차가 필요한 만큼 fast track 적용 필요
-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의무교육을 면제하고 자율적 관리로 전환시킴으로서 관련 인력의 효율적 활용 도모

□ 규제특례 세부내용

규제특례 조항	규제특례 세부내용
특구법 제26조 (「출입국 관리법」에 의한 특례, 제9조 3항(사증발급절차), 제10조 2항(체류기간))	-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 및 1회 체류기한 상한
특구법 제36조의8 (「특허법」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2항, 동법시행령 9조 2항)	-특허청장은 특허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
특구법 제44조의3 2호 (「에너지 이용 합리화법」에 관한 특례-제65조(에너지 관리자 등 담당자 교육))	-에너지 관리자 등 담당자는 관련 법규에 근거 받드시 정례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음

4. 태양광부품소재 허브단지 육성 사업(충주기업도시 내 생산용지)

□ 사업개요

- 위치 : 충주시 주덕읍, 이류면, 가금면 일원
- 사업비 : 429,017백만원(생산용지 : 53,664백만원)
- 면적 : 7,013천㎡(생산용지 : 1,223천㎡)
- 유치업종 : R&D시설, 첨단전자·정보 부품소재산업

□ 규제특례 조항

- 특구법 제26조(「출입국관리법」에 관한 특례-법 제8조 및 제10조)
- 특구법 제36조의8(「특허법」에 관한 특례-법 제61조 2항, 동법시행령 9조 2항)
- 특구법 제36조의 9(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관한 특례)

□ 규제특례의 필요성

- 태양광부품산업 전문단지 내 관련 외국전문인력의 출입기준 완화를 통한 전문인력 확보 및 기술력 제고
- 태양광부품산업 내 태양광 기업체의 기술개발에 대한 특허심사 절차의 신속화를 통한 개발기술의 조기 인증
- 산업단지의 사업자가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공동임명을 통한 인력 및 비용 저감

□ 규제특례 세부내용

규제특례 조항	규제특례 세부내용
특구법 제26조 (「출입국관리법」에 관한 특례-법 제8조 및 제10조)	-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한 상한을 대통령령(E-1, E-3, E-4, E-5, E-7/ 5년)으로 달리 정함
-특구법 제36조의8 (「특허법」에 관한 특례-법 제61조 2항, 동법시행령 9조 2항)	-특허청장은 특허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음
-특구법 제36조의 9 (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관한 특례)	-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같은 산업단지의 사업자가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공동임명 가능

5. 태양광부품산업 전문단지조성 사업(증평2일반산업단지)

□ 사업개요

- 위치 :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일원
- 사업비 : 811억원
- 면적 : 734천 m²
- 사업내용
 - 태양광부품산업단지 조성 및 태양광부품생산업체 표적유치

□ 규제특례 조항

- 특구법 제26조(「출입국관리법」에 관한 특례-법 제8조 및 제10조)
- 특구법 제36조의8(「특허법」에 관한 특례-법 제61조 2항, 동법시행령 9조 2항)
- 특구법 제36조의 9(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관한 특례)

□ 규제특례의 필요성

- 태양광부품산업 전문단지 내 관련 외국전문인력의 출입기준 완화를 통한 전문인력 확보 및 기술력 제고
- 태양광부품산업 내 태양광 기업체의 기술개발에 대한 특허심사 절차의 신속화를 통한 개발기술의 조기 인증
- 산업단지의 사업자가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공동임명을 통한 인력 및 비용 저감

□ 규제특례 세부내용

규제특례 조항	규제특례 세부내용
특구법 제26조 (「출입국관리법」에 관한 특례-법 제8조 및 제10조)	-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한 상한을 대통령령(E-1, E-3, E-4, E-5, E-7/ 5년)으로 달리 정함
특구법 제36조의8 (「특허법」에 관한 특례-법 제61조 2항, 동법시행령 9조 2항)	-특허청장은 특허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음
특구법 제36조의 9 (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관한 특례)	-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같은 산업단지의 사업자가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공동임명 가능

6. 태양광부품소재특화단지조성 사업(음성원남산업단지)

□ 사업개요

- 위치 : 음성군 원남면 일원
- 사업비 : 114,828백만원(국비 22,966, 민자 91,862)
- 면적 : 1,084천㎡
- 기간 : 2011~2013(규제특례 적용)
- 사업내용
 - 태양광부품소재생산업체 표적유치

□ 규제특례 조항

- 특구법 제26조(「출입국관리법」에 관한 특례-법 제8조 및 제10조)
- 특구법 제36조의8(「특허법」에 관한 특례-법 제61조 2항, 동법시행령 9조 2항)
- 특구법 제36조의 9(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관한 특례)

□ 규제특례의 필요성

- 태양광부품산업 전문단지 내 관련 외국전문인력의 출입기준 완화를 통한 전문인력 확보 및 기술력 제고
- 태양광부품산업 내 태양광 기업체의 기술개발에 대한 특허심사 절차의 신속화를 통한 개발기술의 조기 인증
- 산업단지의 사업자가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공동임명을 통한 인력 및 비용 저감

□ 규제특례 세부내용

규제특례 조항	규제특례 세부내용
특구법 제26조 (「출입국관리법」에 관한 특례-법 제8조 및 제10조)	-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한 상한을 대통령령(E-1, E-3, E-4, E-5, E-7/ 5년)으로 달리 정함
특구법 제36조의8 (「특허법」에 관한 특례-법 제61조 2항, 동법시행령 9조 2항)	-특허청장은 특허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음
특구법 제36조의 9 (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관한 특례)	-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같은 산업단지의 사업자가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공동임명 가능

7. 태양광부품소재 특화단지 조성(진천·음성혁신도시 내 산업용지)

□ 사업개요

- 위치 : 진천군 덕산면, 음성군 맹동면 일원
- 사업비 : 총사업비(1조 3,503억원) / (산업용지 : 1,114억원)
- 면적 : 1,084천㎡(산업용지 : 557천㎡)
- 기간 : 2006~2012년
- 사업내용
 - 태양광산업 중심의 IT산업용지 조성

□ 규제특례 조항

- 특구법 제26조(「출입국관리법」에 관한 특례-법 제8조 및 제10조)
- 특구법 제36조의8(「특허법」에 관한 특례-법 제61조 2항, 동법시행령 9조 2항)
- 특구법 제36조의 9(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관한 특례)

□ 규제특례의 필요성

- 태양광부품산업 전문단지 내 관련 외국전문인력의 출입기준 완화를 통한 전문인력 확보 및 기술력 제고
- 태양광부품산업 내 태양광 기업체의 기술개발에 대한 특허심사 절차의 신속화를 통한 개발기술의 조기 인증
- 산업단지의 사업자가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공동임명을 통한 인력 및 비용 저감

□ 규제특례 세부내용

규제특례 조항	규제특례 세부내용
특구법 제26조 (「출입국관리법」에 관한 특례-법 제8조 및 제10조)	-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한 상한을 대통령령(E-1, E-3, E-4, E-5, E-7/ 5년)으로 달리 정함
특구법 제36조의8 (「특허법」에 관한 특례-법 제61조 2항, 동법시행령 9조 2항)	-특허청장은 특허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음
특구법 제36조의 9 (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관한 특례)	-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같은 산업단지의 사업자가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공동임명 가능

1단계 특화사업(예정사업)

1. 청원군 푸르미 마을 조성사업

□ 사업개요

- 위치 : 청원군 강내면 궁현2리 연꽃마을
- 면적 : 1개 마을, 약 100천㎡
- 사업비 : 444.3백만원
- 기간 : 2011. 1월~2011.12월
- 사업내용
 - 신·재생자원을 통한 에너지 자립화 : 주택, 공용시설 및 생활시설화
 - 주거 및 생활공간 시설의 에너지 절약형 시설설치
 - 푸른자연 체험학교 운영

□ 규제특례 조항

- 특구법 제26조(농지법에 관한 특례)제5항
- 특구법 제27조(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) 제1항

□ 규제특례의 필요성

- 신·재생자원을 통한 에너지 자립화
- 주거 및 생활공간 시설의 에너지 절약형 시설설치
- 에너지 체험 숙박시설, 푸른자연 체험학교, 녹색관광 활성화

□ 규제특례 세부내용

규제특례 조항	규제특례 세부내용
특구법 제26조 (농지법에 관한 특례)제5항	-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있음
특구법 제27조 (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)제1항	-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에 필요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에 필요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를 설치할 수 있음

2. 괴산 태양광부품소재 산업단지 조성 사업

□ 사업개요

- 위치 :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일원, 청안면 청용·조천리 일원
- 사업비 : 84,130백만원(국비 19,540, 군비 500, 기타 64,090)
- 면적 : 452천㎡
- 기간 : 2009~2011
- 사업내용
 - 태양광 관련업체 및 기타 전지 관련업체 입주로 태양광기업 집적화 및 생산 증대로 태양광 부품소재산업 주도

□ 규제특례 조항

- 특구법 제26조(「출입국관리법」에 관한 특례-법 제8조 및 제10조)
- 특구법 제36조의8(「특허법」에 관한 특례-법 제61조 2항, 동법시행령 9조 2항)
- 특구법 제36조의 9(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관한 특례)

□ 규제특례의 필요성

- 태양광부품산업 전문단지 내 관련 외국전문인력의 출입기준 완화를 통한 전문인력 확보 및 기술력 제고
- 태양광부품산업 내 태양광 기업체의 기술개발에 대한 특허심사 절차의 신속화를 통한 개발기술의 조기 인증
- 산업단지의 사업자가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공동임명을 통한 인력 및 비용 저감

□ 규제특례 세부내용

규제특례 조항	규제특례 세부내용
특구법 제26조 (「출입국관리법」에 관한 특례-법 제8조 및 제10조)	-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한 상한을 대통령령(E-1, E-3, E-4, E-5, E-7/ 5년)으로 달리 정함
특구법 제36조의8 (「특허법」에 관한 특례-법 제61조 2항, 동법시행령 9조 2항)	-특허청장은 특허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음
특구법 제36조의 9 (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관한 특례)	-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같은 산업단지의 사업자가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공동임명 가능

2, 3단계 특화사업

추진단계	특화전략	특화사업
2단계	태양광부품 · 소재 생산허브육성	-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(청주시) -신산업단지 조성 사업(충주시) -신척산업단지 조성 사업(진천군) -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(음성군)
	R&DB기반 조성	-태양광기업 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 (청원군) -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사업(증평군) -태양광산업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(충주시)
	글로벌 전문인력양성	-태양광교육 연계 및 전문화사업(프로그램사업) -전문계고-대학, 대학-대학, 전문계고-대학-기업 간
	태양광보급활성화 기반 및 민간보급체계 구축	-시민태양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사업 -태양광녹색마을 조성 -태양광산업 기술박람회 개최
3단계	태양광부품 · 소재 생산허브육성	-세계적 초일류 기업 유치 -대기업 및 장비 · 소재업체 육성(프로그램사업)
	R&DB기반 조성	-R&DB 원스톱시스템 구축(프로그램사업)
	글로벌 전문인력양성	-(가칭)태양광연합대학원 설립 사업 -태양광 관련 우수대학 아시아 캠퍼스 및 연구소 유치
	태양광보급활성화 기반 및 민간보급체계 구축	-국제그린 태양광 마케팅지원센터 조성 사업(음성군) -녹색마을 활성화 사업(협업체 활성화, 포상제도 도입, 모델하우스 건립)